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76

발의연월일: 2021. 11. 2.

발 의 자:민홍철・김병주・김정호

김홍걸 · 서영교 · 송갑석

안규백 · 윤후덕 · 이병훈

이상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오토바이 단속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측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점검을 진행하기 어렵고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등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제58조제5호 중 "제36조제2항을"을 "제36조제3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 |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 |
| | <u>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u> |
| | <u>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u> |
| | 장・군수・구청장은 경찰,「한 |
| | 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 |
| | 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 |
| | 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 |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
| |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
| | <u>다.</u> |
| <u>②·③</u> (생 략) |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
| | 과 같음) |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58조(벌칙)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 |
|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 |
| 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 | 5. 제36조제3항을 |
| 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 | |
| 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
| 6. (생략) | 6. (현행과 같음) |